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조 중 “公務員(法令에 의하여 公務員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2항제1호·제29조·제35조”를 “제22조제2항제1호·제28조의2·제29조·제35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에 관한 장부에 수임일,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사무의 내용 외에 수임액도 기재하도록 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

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적용대상 중 “공무원”의 범위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이자제한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3월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성호

●법률 제8322호

이자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이자제한법 제정이유

이 법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시기에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사채업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시 이 법을 제정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자의 최고한도(법 제2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도록 함.

나. 간주이자(법 제4조)

이자의 최고한도를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은 이자로 보도록 함.

다. 적용범위(법 제7조)

자금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법학원 육성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3월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무위원 김성호
법무부장관

●법률 제8323호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